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250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315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024. 8. 28.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3.)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813호)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024. 9. 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3.) 상정·심사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3.)는
위 2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연번 1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연번 2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9.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

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u>제15조</u>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제12조</u> 및 <u>제14조</u> 에 규정된 죄	2. ----- ----- ----- <u>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u> ----- ----- ----- <u>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